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80
----------	-----

2019년 4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19일, 김정환 의원 외 17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4월 1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제거로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시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2016년 기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¹⁾은 7,961동²⁾, 1,197천^{m²}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교체실적은 총 546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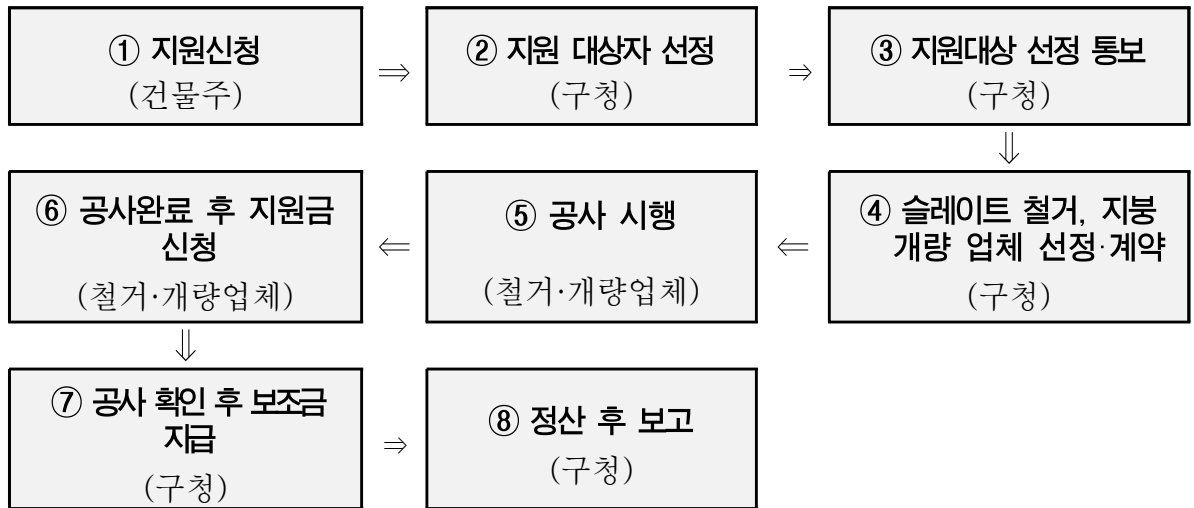
〈슬레이트 지붕 교체실적(보조금 지원)〉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거실적(동)	546	210	152	67	68	26	23
소요예산(백만원)	1,469	644	430	119	141	60	75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 개량시 비용 지원은 국고보조사업(국비:시비=50:50)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본부 집수리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
- 2019년의 경우 당초 목표물량은 30동이었으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23동으로 축소되었으며, 세부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악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2) 주택 5,068동, 시설 1,213동, 공장 573동, 창고 243동, 기타 864동



2)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상한액 규정 삭제(안 제12조제2항)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19.1)에서는 국고보조금 단가에 지자체별 여건, 신청자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방비 지원금을 더해서 책정하고 이 경우 지방비는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단가〉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국 비	가구당 168만원	가구당 151만원
지방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단, 국비 지원단가 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단, 국비 지원단가 이상)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재를 해체·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 면적에 따라 최고 3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일례로 2019년도³⁾ 국고보조금 교부는 해체·제거·처리에 가구당 168만원,

교체·개량에 가구당 151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칭비율(국비50:시비50)에 맞춰 시비를 반영할 경우 각각 336만원, 302만원까지 지원 비용은 증가 될 수 있음.

〈조례 개정 전·후 가구당 지원 단가 변동〉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비 고
개정 전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최대 138만원 증가
개정 후	최대 336만원	최대 302만원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 개량시 지원 비용 상한액(최고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에 상응하여 지원 비용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을 따르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3) 교체·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9년부터 일부(전체 23동 중 4동분) 물량에만 교부 결정되었으나 '20년부터는 해체·제거·처리 물량 전체에 대해 교체·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임.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는 '20년 지원 비용부터 나타날 것임.

[참고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상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중 “해체·제거 및 처리”를 “해체·제거·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을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u>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u>)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u>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u>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재를 해체·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면적에 따라 최고 3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u>해체·제거·처리 등 지원</u>) ① ----- ----- <u>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u> --.</p> <p>〈삭제〉</p> <p>③ ~ ④ (현행과 같음)</p>